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
신청요강**

2009. 8.



한국연구재단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내용	1
1. 지원분야 및 대상	1
2. 지원기간 및 규모	2
3. 지원배분원칙	2
III. 신 청	3
1. 신청자격	3
2. 신청기간	3
3. 신청방법	3
4. 온라인 신청절차	5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 제한	7
6. 심사 및 선정	8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9
8. 연구과제 수행	10
IV.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1
1.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	11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2
V. 간접연구비지원	14
※ 별첨1 - 심사항목 및 배점	15
※ 별첨2 - 단독연구계획서양식(국·영문).....	16
※ 별첨3 - 공동연구계획서양식(국·영문).....	24
※ 별첨4 - 사업 신청관련 FAQ	32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대학교수의 해외방문연구를 지원함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
- 국내외 학자 간 공동연구, 주요연구동향 파악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수준 제고와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 도모

2. 지원방향

- 해외방문연구의 내실화 도모
 - 해외 교수(또는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장려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국제적 학술지 게재를 원칙 화하여 국내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 지양 및 지역별 특화 추진
 - 지역별 점유비율의 합리적인 설정으로 특정국가 편중 지양
- 학술연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학문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선정 추진

II 사업내용

1. 지원 분야 및 대상

가. 지원 분야

- 전 학문분야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해외 공동연구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와 공동연구 수행 시 우대

※ 공동연구 추진 시 가산점(3점 이내) 부여

나. 지원 대상 :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현 소속 대학에서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연구자

2. 지원 예산 : 2009년 12월 말 확정

3. 지원기간 및 규모

가. 지원기간 : 6개월 또는 1년

나. 지원규모 :

o 6개월 : 1,500만원 o 1년 : 2,700만원

4. 지원배분원칙

가. 학문분야별 배분 : 학문분야별 신청과제 수를 고려하여 예산배분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이공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나. 기간별 배분 : 연구기간 1년(70%), 연구기간 6개월(30%)

다. 지역별 배분 :

지역	예산비율	비고
북미 오세아니아	50%	o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o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	40%	o 유럽 o 아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기타	10%	o 기타 아시아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제외) o 남아메리카 (쿠바, 멕시코 포함 전역) o 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포함 전역)

※ 지역구분은 6대주를 기준으로, 권역별 세 부분 분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권역)

※ 단, 상기 원칙에 따라 배분하여 예산을 사용하되, 각 분야별, 기간별, 지역별 선정율에 따라 조정 가능

5.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 국외 전문학술지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 출판 원칙
 - 인문사회분야 : 국제적 수준(A&HCI, SSCI급, SCOPUS) 학술지, 영 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
 - 이공분야 : 국내·외 SCI, SCIE, SCOPUS

Ⅲ 신청

1. 신청자격

- 소속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방문연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현 소속대학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2006년 9월 14일 이전 현 소속기관 전임교원으로 발령받은 자) 근무하고 아래와 같은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자

☞ '05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A&HCI·SSCI·SCI(SCI 및 SCIE)·SCOPUS), 등록 완료된 외국특허 또는 전문학술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의 연구 실적이 인문사회분야 3편, 이공분야 5편 이상

※ 단독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 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 함.

※ 단,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 시 참고할 만한 소명내용을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하여야 함.

- 해외공동연구자 자격

- 해당국 대학 전임교수 및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상

2.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09. 8. 19.(수) 13:00 ~ 9. 18.(금) 18:00까지

- 온라인신청기간 : 2009. 9. 14.(월) 13:00 ~ 9. 18.(금) 18:00 까지
- 소속기관확인 : 2009. 9. 21.(월) 9:00 ~ 9. 23.(수)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연구자가 (구)한국학술진흥재단(www.krf.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함.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개인정보 및 업적정보를 직접 입력 또는 수정한 후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시]

※ 단독연구의 경우

- 파견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단독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1부
(국문 단독연구계획서 포함)
- 방문연구기관 방문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 증빙서류 1부
(번역문 첨부)

※ 공동연구의 경우

- 파견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공동연구계획서(붙임3 양식) 1부
(국문 공동연구계획서 포함)
- 공동연구자 이력서(Resume) 1부 (번역문 첨부)
- 방문연구기관 방문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등 증빙서 1부
(번역문 첨부)

[사업선정시]

※ 단독연구의 경우

- 선정이후 별도 지정일 까지 방문연구기관의 정식초청장 1부
(번역문 첨부)

※ 공동연구의 경우

· 선정 이후 별도 지정일 까지 해당국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수락서 1부
(공동연구의 경우, 번역문 첨부)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선정 이후 별도 지정일 까지 방문연구기관의 정식초청장 1부
(번역문 첨부)

※단독·공동연구 모두 온라인 신청 이후 지정일(2009.09.28.) 까지 연구신청자 재직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을 통한 일괄 제출)

※선정 이후 방문연구를 위한 출국일 전 까지 해당국 공동연구자의 공동연구수락서(공동연구의 경우) 및 정식초청장 제출
(공동연구수락서, 정식초청장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되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온라인 신청 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소속대학(교)을 통해 장기해외방문 가능 여부를 확인함.
- 2)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함.
- 3)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신청 후 추가 등록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시 연구계획서 파일 및 증빙서류를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hwp 또는 Ms-word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붙임2, 붙임3 양식 참조)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사항(기본사항, 대표업적) 입력함.
※ 대표업적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인문사회분야는 3편, 이공분야는 5편을 선택하여야 함.
- 2) 연구계획서(연구업적요약문 포함) 및 증빙서류 탑재.

3) 접수번호는 파일탑재 후에만 볼 수 있으며, 접수번호 확인이 안 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것임.

※ 신청기간 내에 수정은 가능하며, 수정 후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만 온라인 신청이 완료됨.

※ 과제번호는 신청마감 2주일 후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각 연구자의 MY KRF 화면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기간 초기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온라인 신청기한 내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미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온라인 신청기한 내 소속기관 온라인 미승인인 경우 신청 취소함.

다. 온라인 신청 후

1) 신청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함.
- 소속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온라인 기관승인 요청.

2)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 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를 제출 받고 확인함.
- 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2009. 9. 21(월) 09:00 ~ 9.23(수) 18:00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승인함. 승인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 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신청한 교원의 재직증명서를 일괄 재단에 **2009.09.28.(월) 18:00까지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함.(미 접수 시 신청취소로 간주 함)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비 및 구)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급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2005년부터 2009년도 사이에 동 사업에 선정된 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연구비를 지원 받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해외방문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나. 연구 참여 제한

- 이공계 연구자가 연구원으로서 국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
- 인문사회 연구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비를 1인이 연 2과제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9.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 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0.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리더연구지원(우수학자), 기반연구(기초연구-우수논문사후지원), 기반연구(사회과학지정주제-연구자 네트워크), 기반연구(G20 국가 모니터링단 시범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의 과제는 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이후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신청이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되어야만 방문연구 수행이 가능함.
- 재단사업의 신청기간 및 최종선정자 발표시기의 상이로 동 사업과 재단의 다른 연구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동사업의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됨.

6. 심사 및 선정

가.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 구분	심사 내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정보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재단
2 단계	패널심사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최종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단

나. 심사방법 및 내용

- 제 1 단계 심사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여부 등
- 제 2 단계 심사 (패널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100점 (※ 별첨1 참조)
- 제 3 단계 심사(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단
 - 심사내용 : 전공심사결과 검토 및 최종선정과제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다. 선정취소

- 타 기관으로부터 동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다고 신고 된 자 및 기 연구된 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판정된 자.
- 연구계획서 등 제반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연구자
- 선정된 후 2010. 12. 31까지 출국하지 않은 연구자
- 관련서류 미제출자

7.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가. 연구비 지급

- 지급방법 :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출국일 2개월 전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지급을 신청하면 소속기관 해당부서로 연구비 지급
- ※ 선정이후 연구비 신청 시 관련서류:
 - 단독연구 : 방문기관 정식초청장 (번역문 포함)
 - 공동연구 : 공동연구수락서 및 방문기관 정식초청장 (번역문 포함)

나. 연구비 관리

- 연구자가 방문연구기간 중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거나 일시 또는 조기 귀국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다음과 같이 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회수·반납하여야 함

- 방문연구 중단 : 재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 조치함.
- 일시 및 조기귀국 : 허용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초과한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를 일할 계산하여 회수 조치함.
- 연구비는 반드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함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지급된 연구비 전액회수)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
 -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 연구비에서 보고지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회수) 허위 및 표절 등을 하였을 때(지급된 연구비 전액회수)
 - 기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연구과제 수행

가. 출국 : 2010. 12. 31까지 반드시 출국해야 함

나. 연구개시일 : 출국한 다음 달 1일

- 2010년 이전(2009년 출국)에 출국한 경우 2010. 01. 01을 연구개시일로 함.
- 2010년 12월 중 출국한 경우 2010. 12. 31을 연구개시일로 함.

다. 연구기간

- 출국일 다음 달 1일 부터 6개월 혹은 1년
 - ※ 2010년 1월 1일 이전(2009년 출국)출국자의 경우 : 2010년 1월 1일 ~ 6개월 혹은 1년

라. 연구계획 변경

- 연구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 단, 당초 연구계획서와 동일하나 연구수행 도중(또는 이전) 변경이 불가피하여 온라인 연구계획변경을 신청을 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승인함**(단. 파견 국가 및 신청당시 선택한 3개 기관 외 파견 기관 변경은 불가)
-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계획(연구기간, 과제명)변경 불가

마. 일시귀국

- 연구자는 실제 연구기간 중 임의로 연구를 중단하거나 일시 귀국 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시 및 조기 귀국 허용일수(1년 방문 연구자는 30일, 6개월 방문연구자는 15일)내에서 귀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는 사전에 “일시 귀국 사유서”(자유형식)를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 일시·조기귀국 허용일수 초과 시, 초과 일 수만큼 연구비를 일할 반납하여야 함
- 일시 귀국할 경우, 제반 경비는 연구자 본인이 부담함

IV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연구기간 중 각종 보고서 제출 기한

가. 체재지도착보고서 : 연구개시 후 1개월 이내

- 여권사본(인적사항 기재면, 출국일확인도장, 입국일확인도장 각 1부) 첨부하여 제출

나. 귀국보고서 :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단, 귀국 보고서 제출시기가 도래하였지만, 미 귀국하였을 경우에는

미귀국보고서를 제출해야함.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결과보고서 평가

가.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온라인 직접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요약문(국·영문·과견국 언어)
 -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파일탑재
 - 연구결과보고서(원문파일 탑재)
- 결과보고서 미 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는 물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나. 최종 연구결과발표물(게재논문) 제출

-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최종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은 국외 전문학술지 게재를 원칙으로 함

인문사회분야	이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 학술지 : A&HCI, SSCI, SCOPUS - 영어권 국가 또는 파견국가에서 발행하는 우수 저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 학술지: SCI, SCIE, SCOPUS

※ 상기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에 연구자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일정 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가 공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최종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013-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NRF-2010-013-과제번호).”

다. 최종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논문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연구재단 원문정보서비스 등으로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 연구 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 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

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을 게재하여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 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V 간접연구비 지원

- 동 사업은 간접연구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음.

문의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단 인문사회연구지원팀
Tel (02)3460-5575/5688 . E-mail : sjchoi@nrf.go.kr
전산관련문의 : Tel (02)3460-5548/5794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연구역량 (25)	연구실적	○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타당성 (20)	해외방문연구의 타당성 및 필요성	○ 연구가 해당국가(기관)에서 수행되면 효율적인가 ○ 해당국가 counterpart와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해당기관의 각종 기자재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연구기간이 적절한가
독창성 (20)	연구주제의 독창성	○ 참신한 연구 주제인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연구방법의 독창성	○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 방법(도구)을 시도하는가 ○ 새로운 분석 기법을 활용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 (20)	학문적 가치	○ 학술적 측면에서 해외방문연구가 필요한 분야·주제인가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키는가 ○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가
	학문의 균형발전	○ 해당 국가(지역)의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 해당 학문분야가 회귀하거나 소외되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해당국가(기관)에 국내 연구성과 확산이 가능하며, 필요한가 ○ 연구결과가 국내의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교육에 환류될 가능성이 높은가
연구내용 및 방법 (10)	연구내용의 적절성	○ 연구내용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포함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실험 또는 이론계산) 및 결과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 해외방문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5)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검토 되었는가
	인용 및 참고문헌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공동연구 추진 시 가산점(3점 이내) 부여

연구 계획서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유형		공동연구	()	단독연구	()
연구과제명	국 문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연구기간	1년() / 6개월()		방문국가		
연구기관명	1.	확정여부		확정() 잠정()	
	2.			확정() 잠정()	
	3.			확정() 잠정()	
출국예정일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후 3개 기관 이외의 기관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10.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I.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결과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시되, 총 15page 이내(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로 작성하십시오.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영문 혹은 파견국 언어로 작성된 연구계획서 또한 국문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15page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하여 15쪽 이내로 작성,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구계획서를 파견국 언어로 작성할 시, 국문계획서를 활용(번역)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및 교환 서신, 공동연구자 이력서 등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탑재하여 주세요.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없음.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참고문헌

Ⅱ. 연구수행계획

연구추진계획

년 월 일	연구수행내용	비고

Research Proposal

(2010 Visiting Professors Program)

Project Title	Korean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English			
Research Duration	1 year() 6 months()	Visit to Country		
Research Institution	1.	Confirmation	Confirmed ()	
	2.		Provisional ()	
	3.		Confirmed ()	
Expected date of Departure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후 3개 기관 이외의 기관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10.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0 Visiting Professors Program

Project Title	Korean	
	English	

I . Research Project Plan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결과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시되, 총 15page 이내(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로 작성하십시오.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영문 혹은 파견국 언어로 작성된 연구계획서 또한 국문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15page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하여 15쪽 이내로 작성,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구계획서를 파견국 언어로 작성할 시, 국문계획서를 활용(번역)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및 교환 서신, 공동연구자 이력서 등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탑재하여 주세요.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인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없음.

1. Research Objectives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Methods & Project Subjects

3. Anticipated Results and Potential Contribution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Other Points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References

II. Work Plan

Research schedule

Date	Subjects of the Study	

연구 계획서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유형		공동연구	()	단독연구	()
연구과제명	국 문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영 문				
연구기간	1년() / 6개월()		방문국가		
연구기관명	1.		확정여부	확정() 잠정()	
	2.			확정() 잠정()	
	3.			확정() 잠정()	
해외공동 연구자	소속 기관		직위		
출국예정일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후 3개 기관 이외의 기관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10.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I. 연구계획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결과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시되, 총 15page 이내(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로 작성하십시오.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영문 혹은 파견국 언어로 작성된 연구계획서 또한 국문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15page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하여 15쪽 이내로 작성,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구계획서를 파견국 언어로 작성할 시, 국문계획서를 활용(번역)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및 교환 서신, 공동연구자 이력서 등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탑재하여 주세요.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없음.

1.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3. 결과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참고문헌

II. 연구수행계획

연구추진계획

년 월 일	연구수행내용	비고

연구역할분담

참여형태 구분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Research Proposal

(2010 Visiting Professors Program)

Type of research	Joint	()	Singleness	()
Project Title	Korean	※ 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English			
Research Duration	1 year() 6 months()	Visit to Country		
Research Institution	1.	Confirmation	Confirmed ()	
	2.		Provisional ()	
	3.		Confirmed ()	
Collaborators	Institution (country)	Position	Confirmed ()	Provisional ()
Expected date of Departure				

※ 방문국가는 1개국으로 한정하되, 방문기관은 1~3개 기관을 접촉하여 방문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택하여 순위를 정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추후 3개 기관 이외의 기관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국일은 가능한 실제 출국예정 월, 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2010. 12. 31.**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셔야 함을 유념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0 Visiting Professors Program

Project Title	Korean	
	English	

I . Research Project Plan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 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해외방문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학문·사회발전에의 기여, 결과활용방안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시되, 총 15page 이내(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로 작성하십시오.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영문 혹은 파견국 언어로 작성된 연구계획서 또한 국문 연구계획서와 동일하게 15page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및 연구수행계획 포함하여 15쪽 이내로 작성, III-대표업적은 15쪽에 포함되지 않음)
- ※ 연구계획서를 파견국 언어로 작성할 시, 국문계획서를 활용(번역)하여 작성하여 주세요.
-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및 교환 서신, 공동연구자 이력서 등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탑재하여 주세요.
-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자를 인지할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 인표기를 삭제할 필요가 없음.

1. Research Objectives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2. Methods & Project Subjects

3. Anticipated Results and Potential Contribution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기술)

4. Other Points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5. References

II. Work Plan

Research schedule

Date	Subjects of the Study	

Participating Researchers and Responsibilities(Role)

	Responsibilities(Role)
Principal investigator	
Collaborator	

[붙임4] 2010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신청관련 FAQ

1. 2010년도 사업은 공동연구로 진행해야 합니까?

- ▶ 2010년도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은 단독연구 혹은 공동연구 중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연구자와 공동연구 추진 시 가산점(3점 이내)이 부여됩니다.

2.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이 된 지는 3년이 넘었으나, 현 소속 대학에 임용된 지는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청 가능합니까?

- ▶ 본 사업은 현 소속 대학에서 전임교원(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전 소속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현 소속 대학에 임용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이전 현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

3. 공동연구의 경우, 외국기관의 연구자는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합니까?

- ▶ 공동연구자의 국적은 불문합니다. 방문 예정 국가의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이면, 한국 국적의 연구자도 상관없습니다.

4. 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공동연구자의 소속이 방문하고자하는 기관이어야 합니까?

- ▶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학 혹은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수, 전임연구원이면 가능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 소속의 연구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5. 방문하고자 하는 해외기관은 대학으로 국한되나요?

- ▶ 방문기관은 대학,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면 가능합니다.

6. 사업을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단독연구의 경우

- ① 단독연구계획서(신청요강 붙임2. 단독연구계획서 국문+영문)
- ②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번역본 포함)
※방문기관 정식초청장은 선정이후 출국 전 연구비신청 시 제출

▶ 공동연구의 경우

- ① 공동연구계획서(신청요강 붙임3. 공동연구계획서 국문+영문)
- ② 공동연구자 이력서(번역본 포함)
- ③ 방문연구기관 동의서 또는 교환서신(e-mail 가능) (번역본 포함)
※방문기관 정식초청장은 선정 이후 출국 전 연구비신청 시 제출
※공동연구 수락서는 선정 이후 출국 전 연구비신청 시 제출

7. 사업에 선정된 이후 출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 본 사업은 2010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에 출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상기 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됩니다. 예외적으로 2010년 이전(2009년 中 출국) 출국자의 경우에는 연구 시작 일을 2010년 1월 1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2010년 이전(2009년 中 출국) 출국자 연구기간 : 2010년 1월 1일~6개월
혹은 1년

8. 공동연구자의 재직증명서도 필요합니까?

- ▶ 공동연구자의 재직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신청하는 연구자의 재직증명서만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신청연구자 소속 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온라인신청기간 이후(2009.09.28까지) 일괄적으로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9. 방문연구기관 동의서는 특정 양식이 있습니까?

- ▶ 방문연구기관 동의서는 특정 양식이 없습니다. 초청장 형식이나 교환서신의 형태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동의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온라인신청 시 연구계획서와 증빙서류의 탑재방식은?

- ▶ 온라인 신청 시 국문연구계획서와 영문연구계획서는 하나의 파일로 탑재하여 주세요.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의 분량은 국문과 영문이 합쳐져 30page 이상이 됩니다. 방문연구기관동의서(혹은 이메일, 번역본 포함), 공동연구자이력서(공동연구의 경우, 번역본포함) 등의 증빙서류는 연구계획서와는 별도로 탑재하게 됩니다.

11. 파견국언어로 작성하는 경우 연구계획서양식은?

- ▶ 국문연구계획서와 함께 파견국언어로 작성된 연구계획서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파견국언어의 경우 국문연구계획서 양식을 활용하여 파견국언어로 작성, 제출하여 주세요.

12. 공동연구의 경우 최종연구결과물은 공동저자로 발표해야 합니까?

- ▶ 공동연구의 경우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공동연구자와 공동저자로 결과물을 발표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주저자이거나 교신저자이어야 합니다. 발표 대상 학술지는 신청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